

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5일
통보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(전화번호:)		
설치장소		처리방법		
처리용량(㎥/일) 또는 처리대상인원(00명용)		준공적합 통지일		
사용시작의 지연사유				

사용시작 예정일

「하수도법」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유의사항

1.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

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

2.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.

처리절차

통보서 작성	→	접수(민원실)	→	검토	→	현장조사	→	결재
통보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